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4. 12. 10.(화) 11:00

전파 규제 개선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한다

－ 『전파법 시행령』 개정 : 전파응용설비 다중차폐시설의 범위를 다양한 구조의 건물로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건물 외에 합성벽 등 다양한 건물도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 다중차폐시설 :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현행: 창문 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

전파응용설비는 전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가열, 절단, 세척하는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만 운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차폐시설의 인정 범위를 다양한 공법으로 지어진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는 건물의 재질이나 창문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파 차폐설비만 갖추면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하여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설비들의 검사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검사수수료에 대한 감경(약 40%)이 가능하여 반도체 업계의 검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파법 시행령』 개정 내용 >

	기존		개정
(정의)	<u>창문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u>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	⇒	<u>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u>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
(용도)	전파응용설비(반도체 설비 등)		전파응용설비(반도체 설비 등)

조치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제4항」 개정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반도체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시설자의 검사규제를 완화하여 제품의 원활한 생산 지원 및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전파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윤희봉 (044-202-4950)
	전파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만 (044-202-4955)

현행	개정안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 폐시설”이란 <u>창문없이 철근콘 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 내에</u>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 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u><신설></u> <u><신설></u>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다음 각 호의</u> ----- ----- ----- -----. 1. <u>창문 없이 철근콘크리트로</u> <u>만들어진 건물</u> 2. <u>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물에</u> <u>준하는 수준으로 전자파를 차폐</u> <u>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u>

